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8일, 진성준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
회부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11.9.)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2.4.) 상정,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진성준의원)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편

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 허용 및 간접투자 범위 확대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4179호)에 반영된 개정사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시행 전 법률(법률 제2106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고려하여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개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 허용 및 간접투자 범위 확대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4179호)에 반영된 개정사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시행 전 법률(법률 제2106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고려하여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개정방식을 사용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의2제2항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으로, “출자할”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로 한다.

법률 제2106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3항 중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경우”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 중 “출자 및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을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으로 한다.

안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06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생략)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 -----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 ----- ----- 출자할 -----.	② -----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 ----- ----- ----- -----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③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	③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
항에 따른 집합투
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법률 제21065호 한국
수출입은행법 일부개
정법률

제20조의2(법인에 대
한 출자 등) ① .

② (생략)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
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재정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
항에 따른 집합투
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8항
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에 -----

-----.

법률 제21065호 한국
수출입은행법 일부개
정법률

제20조의2(법인에 대
한 출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경우 -----

-----.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 ----- ----- ----- <u>출자 및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u> ----- ----- ----- ----- ----- ----- -----.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 ----- ----- ----- <u>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u>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25조(업무의 제한) ① · ② (생략)	제25조(업무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업무의 제한)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u>③ 수출입은행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할 때에는 관련된 사업에 대</u>	<u><삭 제></u>

	<u>한 수익성 확보가 확실한 경우에 한한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투자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06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u>제3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06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3항 중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출자”를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06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6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 ② (생략)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u>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u>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법률 제2106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경우</u> ----- ----- ----- -----.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 ----- <u>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u>-----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